

지방세법

안녕하세요...노량진 박문가 세법 대표교수 이수천입니다.

2019.6.15.에 실시된 지방직(서울시 제외) 지방세법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올려드립니다.

박문각에서 제가 한달 여 동안 특강을 했던 내용이 거의 100%가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. 아마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최소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것입니다.

세법공부는 논리를 익히는 과정입니다. 따라서 철저한 세법의 논리를 가지는 것이 최적의 세법공부방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- 문 1. 「지방세기본법」상 세무공무원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공공기관이 급부·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
 - ② 국가기관이 조세징수를 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
 - ③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
 - ④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

1. 【정답】 ①

① 공공기관이 급부·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는 「지방세기본법」상 세무공무원이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- 문 2. 「지방세법」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.
 -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.
 - ④ 건축물 중 조작(造作) 설비,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(主體構造部)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(加設)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2. 【정답】 ①

①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「지방세법」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. 이를 종류·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이라고 한다. 따라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지방세법」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.

- 문 3. 「지방세법」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냄새 맡는 담배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담배이다.
 -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 - ③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,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.
 - ④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.

3. 【정답】 ④

④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. 이를 「지방세법」상 담배소비세의 반출의제라고 한다.

- 문 4. 「지방세법」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?
- 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
 - ②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
 - ③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
 - ④ 레저세의 납세의무자

4. 【정답】 ②

②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이지만,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한다.

- 문 5. 「지방세법」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.
 -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더라도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.
 - ③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.
 -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.

5. 【정답】 ④

- ①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“부동산의 소재지”이다.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다.
-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을 “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”에는 지방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③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세율은 해당 부동산가액의 1,000분의 8로 한다.

문 6. 「지방세기본법」상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② 이의신청인,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- ③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④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이의신청,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.

6. 【정답】 ①

- ① 「지방세기본법」상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“90일 이내”에 하여야 한다.

문 7. 「지방세법」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.
-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「부가가치세법」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- ③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.
-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,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.

7. 【정답】 ④

-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도,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문 8.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감면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면신청서의 제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.
- ③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.

8. 【정답】 ②

- ②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도 감면신청서의 제출에 따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.

문 9. 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
- ②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취소된 경우
- ③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
- ④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

9. 【정답】 ①

① 다른 지문의 내용은 모두 지방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사유가 된다. 그러나 최초의 신고·결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의 근거가 된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.

문 10. 「지방세법」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.
-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
- ③ 거주자가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.
- ④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거주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으로 충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다.

10. 【정답】 ④

④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문 11. 「지방세기본법」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,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장부·서류 등의 은닉, 제출지연,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.
- ④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11. 【정답】 ③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“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”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. 그 이유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「지방세기본법」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.

문 12. 「지방세기본법」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?

- ① ‘납세자’란 납세의무자(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)와 특별납세의무자를 말한다.
- ② ‘표준세율’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조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말한다.
- ③ ‘공과금’이란 「지방세징수법」 또는 「국세징수법」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·관세·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.
- ④ ‘체납처분비’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.

12. 【정답】 ③

① 납세자란 납세의무자(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)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.
②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말한다.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의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.
④ 체납처분비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각, 운반, 공매절차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.

문 13.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.
- ②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.
-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- ④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13. 【정답】 ③

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인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.
②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, 주택의 건물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해당 재산세에 대해 “각각” 납세의무를 진다.
④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.

문 14. 「지방세징수법」상 징수유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

14. 【정답】 ②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은 할 수 없지만, 교부청구는 할 수 있다.

문 15. 「지방세법」상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주민세

② 지방교육세

③ 등록면허세

④ 지방소득세

15. 【정답】 ②

② 지문에서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때에 납부해야 하는 조세는 지방교육세이다.

문 16. 「지방세법」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이다.

②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③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·징수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법정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
16. 【정답】 ④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법정 표준세율의 50%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 다만,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따라서 “원자력발전”과 “화력발전”의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는 경우에도 표준세율의 50%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없다.

문 17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상 종교단체가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없다.

②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
③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·성당·사찰·불당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.

④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
17. 【정답】 ①

①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.

문 18. 「지방세기본법」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·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.

②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.

③ 징수유예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, 그 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그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.

④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.

18. 【정답】 ③

③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의 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“정지”되고, 그 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그 시효는 새로 진행된다. 따라서 징수유예기간은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닌 정지사유이다.

문 19. 「지방세기본법」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지만,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.

②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.

③ 과세표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.

④ 납세의무자가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.

19. 【정답】 ㉠

- ㉡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.
- ㉢ 과세표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㉣ 납세의무자가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1일 당 10,000분의 2.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.

문 20. 지방세법령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㉠ 법인 설립 시 40%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20%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60%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,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60%이다.
- ㉡ 법인 설립 시 60%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10%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70%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,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10%이다.
- ㉢ 법인 설립 후 60%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10%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70%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,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10%이다.
- ㉣ 법인 설립 후 60%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15%의 주식을 양도하여 총 45%의 주식을 소유하던 중 추가로 10%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55%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,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5%이다.

20. 【정답】 ㉣

- ㉣ 법인 설립 후 60%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15%의 주식을 양도하여 총 45%의 주식을 소유하던 중 추가로 10%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55%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,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없다, 그 이유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(55%)이 종전의 최고비율(60%)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.